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32

발의연월일: 2020. 7. 28.

발 의 자:이상민·황운하·조승래

김진표 • 박영순 • 박성준

기동민 · 김종민 · 어기구

박범계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자로가 설 치된 지역에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원 선임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음.

또한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 생하는 각종 사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 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, 관계

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(안제92조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3 신설).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즉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3조의3(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, 연구용·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(이하 "설치지역"이라 한다)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, 설치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
 - 2.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
 - 3. 지방자치단체 및 설치지역 주민이 제기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사항
 - 4.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사항

-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 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1. 위원회 공무원
- 2.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
- 3.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
- 4. 설치지역 주민 중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
- 5.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가
- 6.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는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·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와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 ① 제92조(장해방어조치 및 보고)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 원회는 즉시 해당 원자력이용시 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3조의3(원자력안전협의회의 <신 설>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발 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, 연구 용 ·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 설등의 설치 지역(이하 "설치 지역"이라 한다)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, 설치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

-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 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- 1.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
- 2.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 경영향평가 관련 사항
- 3. 지방자치단체 및 설치지역

 주민이 제기한 원자력안전관

 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되어야 한다.
- 1. 위원회 공무원
- 2.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전문<u>가</u>

- 3.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
- 4. 설치지역 주민 중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
- 5.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관련전문가
- 6.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 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
- ④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는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·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다. 이경우 위원회와 원자력관계사업자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

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 령령으로 정한다.